

[개정안]

▶ 제103조 제1항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법 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1호와 같다.

-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1993년 0월 00 일 단서 삭제)

제2항 : 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 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칙 (1993년 0월 00일)
 - 1. 이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9> 「교육부의 정원령 개정안」 참고

▶ 보충역 편입절차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병무청에서는 88년 8월 1일부터 89년 3월 24일까지 발효했던 수형자 처리 기준을 참고로 시기와 절차를 결정하여 시국관련 수형자들을 포괄적으로 보충역에 편입시킨다.

● 참고자료 - 수형자 처리 예규

(1988. 12. 29 병무청 예규 제2-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사고 예방과 정병육성을 위하여 3년 미만의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병역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3조(수형자의 병역처분 기준) ①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방위소집을 면제한다.

②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다. 다만,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불구하고 선병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집행유예자 ————— 이상, 현역입영 대상

□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초과 2년 미만의 집행유예자 ————— 이상, 방위소집 대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이상의 형 선고자로서 2년 이상의 집행유예자

 소년원 재원 천려자 ————— 이상, 징집-소집면제 대상

제4조(적용 준칙) ① 선고형량과 집행유예기간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영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처분한다.

「예시1」 - 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형량에 의거 처분

- 징역 또는 금고 6월 _____ 방위소집 대상
 징역 또는 금고 1년 _____ 징집-소집면제 대상

「예시2」 -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선고 형량과 집행유예기간에 의거 처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_____ 현역입영 대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_____ 이상, 방위소집 대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 _____ 징집-소집면제 대상

「예시3」 - 사면 또는 감형자는 최초의 선고형량을 기준하여 처분

② 소년원 재원자 및 재원 전력자는 징-소집을 면제처분한다. 그러나, 보호처분, 감호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비수형 소년범은 선병기준에 따라 정상처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이전 88. 8. 1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은 본 예규에 의거 처리한다.

② 88. 7. 31 이전 수형자는 종전의 지침에 의거 병역처분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라 입영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여 처분한다.

■ 별첨자료 1

해당자 명단 (4월 18일 현재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아래의 명단은 본「모임」에 명단이 확보된 인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명단은 주로서울지역에 한하여 파악된 것인 바, 실제 해당자는 대략 300명 이상에서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 2년 이상 복역한 자

김정훈	서울대 사회	87학번	국보	집시	2년 2월 (1년 6월+8월)
박부휘	서울대 농경제	88학번	집시	폭력	2년 2월 (1년 6월+8월)
김성중	세종대 국문	87학번	국보	집시	2년 2월 (1년 6월+8월)
김대하	경남대 사회	88학번	집시		2년 6월 (1년 6월+1년)
강홍순	여수수산대	89학번	집시		2년 6월 (1년 6월+1년)
최재혁	중앙대 컴퓨터공학		집시		2년 6월 (1년 6월 +1년)
김기석	강원대 화학	87학번	집시		3년 (1년 6월+1년 6월)
이원택	전북대 기계	87학번	집시		3년 (1년 6월+1년 6월)
정명수	경남대 법학	88학번	국보		2년 6월 (1년 6월+1년)
신준진	상지대	87학번	집시		3년 (1년 6월+1년 6월)
정승안	부산대 사회	88학번	집시		2년 6월 (1년 6월 +1년)
백상진	청주대	86학번	국보		3년 (1년 6월 +1년 6월)
홍종원	강릉대	88학번	집시		2년 6월 (1년 6월 + 1년)
권종탁	경북대	85학번	집시		2년 6월 (1년 6월+1년)
김기중	한림대	89학번	집시		2년 4월 (1년 6월 + 10월)
홍용희	외대 일어	88학번	국보	폭력	2년 2월 (1년 6월 + 8월)
정준태	청주대	86학번	집시	노동법	2년 (1년 + 1년)
김의연	외대 서반어	88학번	폭력		2년 6월 (1년 6월 + 1년)

합계 : 18명

2. 1-2년 복역한 자

황덕창	성대	90학번	국보	2년 6월 (1년 + 8월)
이상봉	동국대 정외	85학번	집시	1년 6월
김성구	동국대 정외	87학번	국보	1년 6월

박세환	동국대 국문	87학번	국보	1년 6월
김경환	동국대 사학	87학번	집시	1년 6월
안용현	고려대(조치원)	87학번		1년 6월
임상경	숭실대 화공	85학번	집시	1년 6월
박영필	숭실대 무역	88학번	집시	1년 6월
김학범	서강대 사회	86학번	국보	1년 6월
배진호	성균관대	86학번	집시	1년 6월
김용규	외국어대 신방	88학번	집시	1년 6월
윤동오	외국어대 터키어	87학번	집시	1년 6월
나길수	외국어대 독어	85학번	집시	1년 6월
오인근	외국어대 중어	87학번	집시	1년 6월
변재승	외국어대 (용인)	87학번	폭력	1년 6월
김근재	외국어대 (용인)	88학번	특공방	1년 6월
조재학	중앙대 사학	86학번	집시	1년 6월
이경현	중앙대 철학	86학번	집시	1년 6월
박효근	국민대		국보	1년 6월
김종석	서울산업대	87학번	집시	1년 6월
이훈구	한성대	85학번	집시	1년 6월
김준연	강원대 경제		국보	1년 6월
오재석	경원대	89학번	집시	1년 6월
양정우	한남대	86학번	특공방	1년 6월
김동철	경남대		화염병	1년 6월
이상원	경남대	85학번	폭력	1년 6월
윤태성	창원대		집시	1년 6월
김시몬	목포대	87학번	국보	1년 6월
이영록	외국어대 아프리	87학번	집시	1년 6월
윤원철	충남대 경제	88학번	집시	1년 6월
김진화	서울대 정치	88학번	집시	1년 6월
김정기	청주대		집시,폭력	1년 6월
정순곤	한남대	87학번	집시	1년 6월
이현찬	경기대 (수원)	88학번	집시	1년 6월
류승우	진주경상대	90학번	폭력	1년 6월
장호봉	진주경상대	90학번	폭력	1년 6월
하정우	진주경상대 사회	87학번		1년 6월
이진희	경북대 경제	85학번		1년 6월
양창호	경북대 철학	88학번		1년 6월
이석원	충북대			1년 6월
전갑기	외국어대 경영	88학번	폭력	1년
강옹원	동국대 무역	87학번	국보	1년

이규민	동국대	국문	87학번	국보	1년
백종민	동국대	국문	87학번	국보	1년
전필원	동국대	경제	87학번	국보	1년
김영진	중앙대	경영	86학번	집시	1년
이봉규	창원대		85학번	노동법	1년
권형기	진주경상대		91학번	폭력	1년
박정렬	경북대	불문	89학번		1년
주상중	경북대	철학과	85학번		1년
김종구	중앙대		83학번	국보	1년
이주영	청주대		88학번	국보	1년
김기석	경상대	축산	87학번	집시	1년
김상동	충북대				1년

합계 55명

3. 집행유예자

<명지대>

박문수 중문과 91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정식 중문과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박광철 무역과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홍석 경제과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차준원 행정과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정현석 정외과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병도 전기과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7명

<항공대>

이병욱 항공경영 88학번 집시 10월 2년 집행유예
 인기현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형운 항공전자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3명

<서울대>

박호성 계산통계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조장천 미생물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남정호 해양 87학번 집시 10월 2년 집행유예
 홍원표 지질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윤운상 지질 86학번 국보 2년 3년 집행유예
 김명환 공법 88학번 국보 2년 3년 집행유예

오기형 공법 86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신상엽 동양사 86학번 폭력 26년 3년 집행유예
박왕규 경제 86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유재홍 고미사 86학번 국보 1년 6월 2년 집행유예
조연진 경영 86학번 국보, 징시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조현옥 사회 88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심재웅 경제 88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김봉기 외교 89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권순한 신문 89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이철원 국경 89학번 징시 10월 2년 집행유예
김정수 농경제 89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이수일 농경제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상호 지리 90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민병덕 정치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동수 조선공 87학번 징시 10월 2년 집행유예
양상익 조선공 88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조정식 산업공 88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오원규 건축 88학번 폭력 1.6월 3년 집행유예
성재용 기계공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심재철 공법 88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나영중 공법 88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김태훈 공법 90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이인근 공법 89학번 징시 1.6년 3년 집행유예
김영승 수학교육 88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우석 체육교육 87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권혁 농촌사회교육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문상준 농학 89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우정 농화학 91학번 징시 1.6월 3년 집행유예
이상귀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김명찬 농화학 91학번 징시 1.6년 2년 집행유예
김성영 농학 88학번 화염병 10월 2년 집행유예
김동길 농화학 90학번 특공방 1.6년 2년 집행유예
강호상 국보 6월 1년 집행유예
김성수 산림자원 88학번 징시 1.6년 2년 집행유예
김태현 농학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병진 농학 91학번 징시 1.6년 2년 집행유예
서병철 농촌사회교육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군보 산림자원 90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신범 수의학 89학번 징시 1년 2년 집행유예

유경철 중문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고종훈 동양사 88학번 집시 1.6월 3년 집행유예
안태형 서양사 89학번 집시 1.6년 3녀 집행유예
이재한 국사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인식 철학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홍기 집시 10월 2년 집행유예
서봉수 노문 89학번 집시 8월 2년 집행유예
이 훈 독문 90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박종선 국사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관희 경영 89학번 화염병 1년6월 2년 집행유예

합계 55명

<세종대>

이재국 호경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원교 관경 86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한대희 식공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권오성 국문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4명

<한양대>

김희준 토목 87학번 집시 1.6년 3녀 집행유예
신현욱 사회 87학번 집시 1.6년 3년 집행유예
윤상국 정의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종봉 국문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이회동 87학번 집시 1년6월 3년 + 1년 3년 집행유예
정진성 중문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유지호 중문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희중 생물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지훈 물리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박기복 섬유 89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곽승훈 경제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오윤식 법학 92학번 화염병 1.6년 3년 집행유예
박대원 지질 90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13명

<동국대>

류치건 국교 88학번 국보 1.6년 3년 집행유예
홍사국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이태홍 경영 90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박창수 국문 86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4명

<고려대>

이수영 신방 83학번 국보 2년 3년 집행유예
김형준 정외 90학번 선거법 1년 2년 집행유예
이영태 정외 90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황재우 91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장태상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허영 89학번 짐시 10월
류지온 87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광일 88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손재화 89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홍재 87학번 짐시, 방화 1.6년 3년 집행유예
안병일 87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권성기 86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12명

<연세대>

노태술 정외 85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임상순 행정 88학번 짐시 2.6년 4년 집행유예
장기선 문현정보 88학번 짐시 2년 4년 집행유예
차용호 지질 89학번 선거법 1년 2년 집행유예
곽훈 국문 91학번 화염병 1.6년 3년 집행유예
이선옥 경제 87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양영주 법학 87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김병옥 정외 87학번 짐시 1녀 2년 집행유예
오승록 문현정보 88학번 화염병 10월
이승익 지질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김병관 법학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김상문 건축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서현경 국문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이상섭 사회 90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조태린 국문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이종철 물리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이강국 천기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신국희 물리 88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18명

<승설대>

김철우 국문 87학번 짐시 1년 2년 집행유예
정문일 섬유 89학번 짐시 1녀 2년 집행유예

합계 2명

<서울예전>

전경삼 88학번

<성균관대>

권순형 84학번 집시 10월
김호정 신방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원철 86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3명

<서강대>

박태성 신방 90학번 집시 1.6년 2년 집행유예
송진혁 국문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원준 경영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한철 경영 90학번 화염병 10월 2년 집행유예
윤석진 사학 88학번 폭력 1.6년 2년 집행유예

합계 5명

<외국어대>

김경하 중어 88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백경선 경제 88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정상용 일어 90학번 폭력 6월 1년 집행유예
이한민 무역 86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문화창 독어 88학번 폭력 1년 2년 + 2년 3년 집행유예
김시용 아랍어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권호섭 영어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류온철 불어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현식 중어 90학번 폭력 2년 3년 집행유예
양봉렬 무역 90학번 폭력 2년 3년 집행유예
홍영철 중어 89학번 특공방 2년 3년 집행유예
박윤호 중어 90학번 특공방 2년 3년 집행유예
김형표 경제 91학번 특공방 1년 6월 3년 집행유예
김동철 무역 89학번 국보 1년 6월 3년 집행유예

합계 14명

<중앙대>

김익점 신방 87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양민식 철학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남희 경영 89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박기온 컴퓨터공 89학번 집시 6월 1년 집행유예
김제곤 법학 88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권명성 국문 90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채재원 일문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홍근현 수학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경수 경제 90학번 화염병 선고유예

정철우 용용통계 90학번 집시 선고유예

합계 10명

<경희대>

신석진 경제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심민성 무역 87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재호 무역 87학번 집시 1녀 2년 집행유예
김장규 신방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원관희 사학 88학번 집시 1.6년 3년 집행유예
윤병우 사학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서병식 사학 89학번 화염병 1.6년 3년 집행유예
김수철 물리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조명재 한의 87학번 국보 1년 2년 집행유예
박정우 신방 88학번 집시 8월 2년 집행유예
박홍근 국문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김일영 89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최동섭 90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합계 13명

<조선대>

이창호 치대 83학번 집시 벌금형 - 사상에 문제있다 하여 장교 임용 불허

<안동대>

박명대 국보 1년 6월 2년 집행유예

<대전공전>

조진의 89 집시 6월 1년 집행유예

<충북대>

김회정 89학번 집시 6월

<경북대>

안영민	수학 87학번	? 집행유예
김성제	회계 85학번	? 집행유예
이용재	경제 85학번	? 집행유예

<전남대>

김희송 화공 88학번 국보 2년 3년 집행유예
서선호 독문 89학번 집시 8월 1년 6월 집행유예

<강릉대>

전재현 물리 89학번 특공치상 1년 2년 집행유예

<충남대>

최종길 한문 88학번 폭력 1년 2년 집행유예

<상지대>

김성규 무역 87학번 집시 3년 4년 집행유예

<경기대>

노창식 응용통계 89학번 화염병 1년 2년 집행유예

<성대 수원>

이철모 화공 87학번 집시 2년 6월 4년 집행유예

<한신대>

황채정 신학 90학번 방화 2년 6월 4년 집행유예

<수원대>

김용옥 유전공학 90학번 3자개입

<진주경상대>

배한주 법학 89학번 1년 2년 집행유예

김명룡 법학 89학번 1년 6월 3년 집행유예

김임수 한문 90학번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이현균 한문 91학번 선고유예

이해동 행정 89학번 1년 6월 3년 집행유예

박명현 무역 90학번 1년 6월 3년 집행유예

강한수 법학 91학번 선고유예

합계 7명

<홍익대>

박기철

이도화

<한남대>

정현태 행정 87학번 집시 1년 2년 + 1년 3년 집행유예

김양기 물리 87학번 집시 8월 1년 집행유예

김정태 행정 88학번 집시 1년 1년 6월 집행유예

이상국 정의 88학번 집시 1년 1년 6월 집행유예

장원순 행정 88학번 집시 1년 2년 집행유예

고우진 정의 88학번 집시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인기필 경영 90학번 공무집행방위 10월 1년 집행유예

합계 7명

<부산외대>

이수영

김동현

총인원 283명

■ 별첨자료 3

병역법, 시행령, 수형자처리기준의 변천사

◆ 시기구분:

A. 유신 1기

<----- 긴급조치

B. 유신2기

C. 5공 1기

<----- 유화국면, 학생운동 성장

D. 5공 2기

E. 6공 1기

<----- 공안통치 시작

F. 6공 2기

1. 유신 1기(1975년 7월 10일 이전)

● 병역법 제7조(병역의무의 제한):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6년 미만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33조(징집의 제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3년 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41조(특수전역과 병역면제) 3항: 현역병으로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36조(징집종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② 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

◆ 병역법시행령 제66조(특수전역과 병역면제) 3항: 법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 병의 보충역편입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육군교도소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병무청 시행세칙: 현역입영 면제대상 부분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죄질을 불문하고 현역입영 부적격자로 판정, 보충역 편입

2 유신 2기(1975.7.10 시행세칙 개정)

● 병역법 제7조, 제33조,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66조는 유신 1기와 같음

▷ 병무청 시행세칙: 대학생 현역입영대상자는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영시킨다.

☞ 개정취지: 75년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학생들에 대하여 입영시키려는 의도로 개정

☞ 79년 말 1년간 싸워 해결(시행세칙이 75.7.10 이전으로 개정)

3. 5공 1기(1980-1984.5.25 사이)

● 병역법 제 7조, 제33조, 제4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36조, 제66조는 유신 1기와 같음

▷ 시행세칙: 유신 1기와 같음. 즉, 6개월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

☞ 83년말 유화조치로 인해 5.17 이후 구속자 대거 석방, 복학. 이들에 대한 입영을 위하여 병역법 등 징집법규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5.17 이후 84년 초까지 대상자 보충역 편입 후 개정

4. 5공 2기(84.5.25. 병무청 시행령과 시행세칙 개정)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3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된다.

● 병역법 제57조(특수전역 및 병역면제)

제1항: 수령, 고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 방위소집 면제 또는 방위소집 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예비역의 병종 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03조(수령자 등의 보충역 편입)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병무청장은 제1항 이외의 수령자에 대해서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 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 시행령 제104조(현역병 등의 특수전역, 면역)

제1항: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특수전-면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2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3호;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 병무청의 수령자 처분기준(자세한 것은 <표1-수령자 병역처분기준> 참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징역법을 제외한 10개 특별법(국가보안법 포함) 위반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 해제

5. 6공 1기(88.8.1.-89.3.25. 시행령과 시행세칙 개정)

● 병역법 제3조, 제57조: 5공 2기와 같음.

◆ 병역법 시행령 103조(수령자 등의 보충역편입)

제1항: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제2항: 병무청장은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령자에 대하여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보충역 또는 방위소집의 면제처분을 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104조(현역병 등의 특수전-면역): 5공 2기의 시행령과 같음.

▷ 병무청 수령자 처분기준: 자세한 것은 <표1> 참조.

6. 6공 2기(1989.3.25. 병역법 시행령 개정)

● 병역법 제3조, 제57조: 6공 1기와 같음.

◆ 병역법시행령 103조

제1항: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89.3.25. 단서 신설)
제2항:(1989.3.25. 삭제)

◆ 병역법시행령 104조(현역병의 특수진-면역): 5공 2기, 6공 1기의 시행령과 같음.

▷ 병무청의 수형자 처분기준: <별첨자료> 참고

<표 1>

수형자 병역처분기준			
88.3.1~88.7.31 이전수영자		88.8.1~89.3.25 이전수영자	
책임이 국적 처분		형량이 국적 처분	
구분	처분 기준	구분	처분 기준
현역 입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상 과실로- 실화, 과실 치사상등 ◦ 친시법, 도로교통법등 특별 법 위반자 	현역 입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1년 징역을 이자
정· 소집 면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상 과실로 이외의 수영자 ◦ 10개월 벌벌 위반 수영자 (국가보안법, 특별정취등 범죄처벌법등) ◦ 소년원 치원전력자 ◦ 기소유예 선고를 예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범죄자 ◦ 살인, 강도, 방화, 폭간, 근속 폭행, 존속 상이, 상이 복수, 특정 치사, 약취와 무인 및 치료의 감금은 2회 이상 ◦ 상고, 특정 치상, 특국에 의한 권리침해 방해, 공갈 이간주 거칠 입찰도 및 특수 절도는 2회 이상 	방위 소집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이상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1년 초과 2년 미만의 징역 유이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년 이상 징역을 예상 유이자 ◦ 소년원 치원 전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88.8.1부 터 ◦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4.1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본 치침 적용 처분 - 88.7.31 이전 수영자는 증진 치침이 의거 치분이고, 증전 의 치침이 국적 입영하게 되 는 자이 하여는 본 치침을 적용 치분

■ 별첨자료 4

역대 수형자의 병역복무에 관한 기준

- 「병무행정론」(김문성, 법문사, 89년 5.1판 pp 81-82) 중에서 -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 국민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적을 가진 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또한, 그 형이 감면되더라도 병적에 복적할 수는 없다.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의 대상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현역병 징집을 하지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한편, 종래에는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군사고의 위험방지 및 정병(精兵) 육성을 위해 징, 소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죄질과 형량에 따라 병역처분의 기준을 재조정하여, 단순 과실범이거나 파렴치범이 아닌 범법자는 징, 소집하는 반면, 소년범중 파렴치한 범죄로 선고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징, 소집에서 제외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선고형량에 따라 형기와 집행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징, 소집 의무를 부과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내무부의 협조 아래 현역병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수형자를 사전 확인하고, 입영에서 제외하거나 신상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별첨자료 5

「관보」에 실린 시행령 개정이유

- 「관보」(89년 3.25일판 pp 27-28) 중에서 -

◆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중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던 병역처분의 기준을 이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① 징병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회수에 제한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7급인 경우에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병역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17조 제3항)

② 가족중 2인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종전에는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던 것을 가족이 원하는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되,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기여하도록 함.(령 제98조 제2호)

③ 종전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이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던 것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원칙에 부응하도록 함.(령 제103조 제1항 제1호)

④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던 것을 병역의무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때 한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 청원자 주

역대 병역법 시행령 내지 수형자처리기준이 개정될 때에는 주요 일간지에 그 내용이 실리곤 했는데 89년 3월 25일자 병역법 시행령 개정만은 유독 「관보」에만 실리고 일간지에는 보도되지 않았음.

■ 별첨자료 6

병역법 시행령 103조, 104조

■ 88년 병역법 시행령 103, 104조

103조 1항: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103조 2항: 병무청장은 제1항 1호(2년 이상 형 선고자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 방위병, 또는 보충역편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04조 1항 3호: (각군 참모총장은)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104조 4항: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한을 군사령관, 전역관이 부여된 군병원장,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89년(현행) 병역법 시행령 103, 104조

103조 1항: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89.3.25. 단서 신설)

103조 2항: (1989.3.25 삭제)

104조 1항 3호: (각군 참모총장은)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104조 4항: 88년 이전 시행령과 동일

■ 별첨자료 7

89년 3월 25일 이후의 수형자처리기준

수경시설이 있는 경우 이 병역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병역의무자로 서 5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역이 복무할 수 없으며, 병역에서 제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9.3.25 이후 2년이상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이 면입(상의소집면제)처분하기 되어 2년미만 수령자는 선수등위의 학역에 따라 정상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다만,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중 군 사고가 우려되는 1년이상 2년미만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범한 중위, 강력범 및 폭력범과 3회이상 누벌자는 '89.11.7 이후부터 입영 순위가 후위로 조정됩니다.
 - 살인, 존속살인, 엉아살인, 촉탁승낙이 의한 살인 및 음모
 - 강도, 강도살인, 폭수강도, 악습강도, 강도강간
 - 강간등 이하한 치사상

구 분	적 형
중위, 강력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인, 존속살인, 엉아살인, 촉탁승낙이 의한 살인 및 음모• 강도, 강도살인, 폭수강도, 악습강도, 강도강간• 강간등 이하한 치사상
폭력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치치사, 존속상치, 중상치• 폭행치사상, 존속폭행, 폭수폭행
누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3회이상 수령자

- 그러나 '88.5.1 이후부터 89.3.24까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령자와 88.7.31 이전수령자는 뒷면처분 기준이 의거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별첨자료 8

「국민역」복무의 종류

- 「병무행정론」(김문성, 법문사, 89년 5.1판 pp 189-190) 중에서 -

1. 제1 국민역 복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 국민역에 편입된다. 제1 국민역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1 국민역의 복무는 병역의무의 실체적 이행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의무이다. 제1 국민역의 의무는 신고의 의무, 징병검사를 받을 의무 및 입영의 의무로 구분된다.

18세의 자는 제1 국민역에 편입되며,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다른 구, 시, 읍, 면으로 전적 또는 이동한 때에는 전적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징병검사를 받을 의무로서 징병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병역에 복무하는 것은 아니나,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등 역종이 부여되므로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제1 국민역으로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된 자는 그 입영 또는 소집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 후 입영 전까지 병적의 전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외여행을 하거나 신분상 이동이 있을 때에는 병무관서의 허가를 받거나 사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2 국민역 복무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자이다. 따라서 제2 국민역은 신체적 여건이 실역(實役)에 적합치 못한 자가 복무하게 된다. 제2 국민역 복무는 그 명칭과 같이 국민방위의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제2 국민역에 대하여는 전시근무소집을 위한 의무 이외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 국민역에는 현역복무, 예비역복무, 보충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이하는 「병무행정론 P 187,188」에서 보충역복무에 관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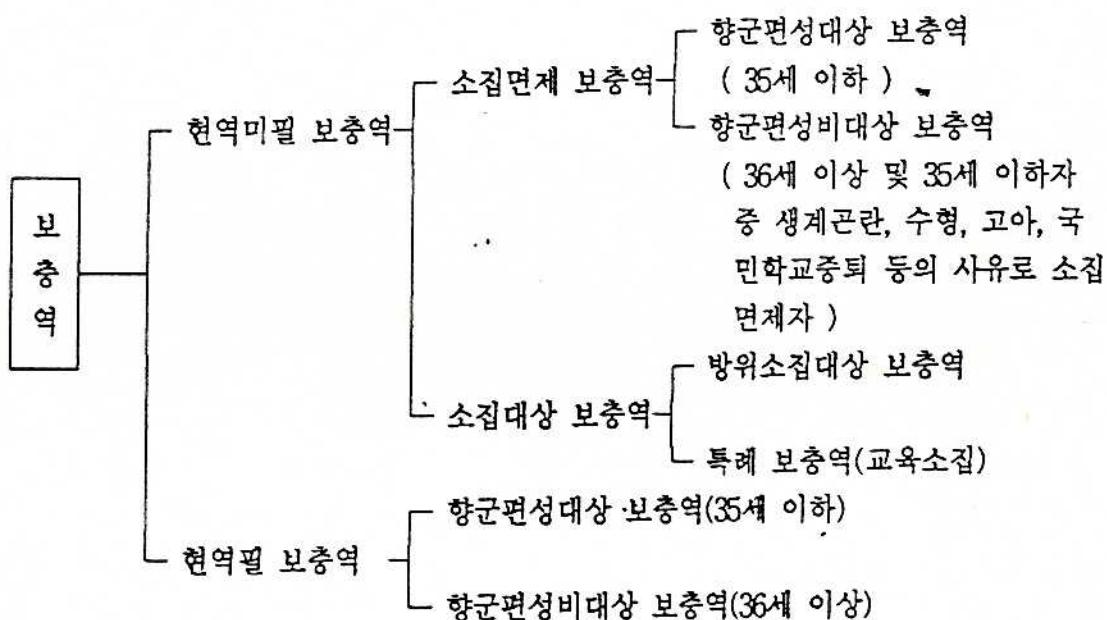
◆ 보충역복무의 의의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역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다. 즉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결원이 있을때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병역이다. 현재,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사고로 인하여 미입영하는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충역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보충역에는 장교계급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임무가 현역병 미입영자의 충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충역중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많은 인원은 아니나 현역에서 특수 전역되어 편입된 보충역도 있다. 그러므로, 보충역에 하사관계급을 두게 하였다.

현역 미필보충역의 활용을 위하여 방위소집제도를 설정하고, 방위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현역을 마친것으로 보아 병역동원 훈련소집의 대상이 되며 전시예비군 동원대상에도 포함된다.

보충역의 종류를 도표화하면 다음표와 같다.



■ 별첨자료 9

93년 교육부 정원령 개정안

대학 학생정원령 개정 내용

구제범위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도 포함됨.

※ 동의대사건 88명, 한외내사건 8명, 서울교대사건 21명 및
한외대 입수경등의 경우와 같이 미등록 제적된 자 등

구제절차

- 정부는 구제대상인 제적자들의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 학생정원령을 개정하고,
- 대학에서는 구제의 대상, 시기, 절차, 조건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함.

입학시기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학년도 제 1학기에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30일까지 재입학할 수 있게 허용.

※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대학 학생 정원령 중 개정령

대학 학생 정원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당해 학교의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입학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할 수 있다.

救濟範圍

- 1987年 7月 11日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 期間中에
- 學生活動에 관한 學則規定에 대해 除籍된 者와
- 學則의 다른 規定(未登錄·未復學·學事警告 등)에 의해 除籍된 者로서 사실상 學生活動과 관련되어 除籍된 者 包含

對象人員

- 우선 금번 救免에서 釋放된 者 69名과 拘束中인 76名 가운데 除籍狀態에 있는 64名이 일차적으로 包含됨은 물론
 - 學生活動關聯 學則條項에 의해 除籍된 것으로 把握·推定되는 入員은 東義大事件88名, 韓外大事件8名 및 서울教大事件21名등을 包含하여 300~400餘名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 여기에 韓外大 林秀卿처럼 未登錄 除籍된 學生이나 全南大 宋甲錫처럼 休學後 未復學狀態에 있는 者 등은 100名內外에 이를 것으로 推定됨.
 - 그러나 運動圈學生들은 學內事態關聯者들을 包含하여 1,200名 또는 2,000名이 復學對象이라고 主張도 하고 있음.
- ※ '88年以後 除籍者 總數 : 85,156名
- 未登錄(31,898), 未復學(30,547), 成績不良(1,610),
性行不良(335) 등

救濟節次

- 政府는 除籍者의 再入學이 可能도록 大學學生定員令을 改正해 주고
 - 大學에서는 再入學시켜야 할 구체적인 對象學生의 遞別과 그외에 필요한 節次와 條件등을 自律的으로 決定·處理토록함.
- ※ 今學期에 한해 4月30日까지 登錄할 수 있도록 定員令附則에 規定

※ 과거 제적성 구제조치 결과

	시 행 연 도	구 제 범 위	복 학 자 수
1 차	'80	'73. 3.17- '79. 12. 31	33명
2 차	'83	'80. 5.17- '83. 12. 21	862명
3 차	'87	'83. 12. 22- '87. 7. 10	10,862명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509	11

● 성명서 ●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자, 민주 양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1. 빼앗긴 젊음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회의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군사통치시대의 한가운데에는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름없는 피와 땀으로 기억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던 많은 청년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억압에 묶여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량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들 530여 양심수들을 맞이해준 것은 따뜻한 개혁의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9년의 '공안정국'에서 학생운동을 탄압하고자 군사정권에 의해 개악된 병역법은 아직도 벼刹히 살아남아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상실한 아픔을 채 달랠지도 못한 이들에게 또다시 가정과 사회로부터 떠날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6공화국시기의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 500여명은 수배와 구속으로 얼룩진 지난 20대의 삶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양심수의 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을 결성하여 각계각층에 자신들의 처지와 주장을 알리고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 등은 이제라도 진정한 문민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병무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7월 6일 국회 국방상임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88년도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지난 10월 8일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였고, 이러한 국방부측의 수구적 입장에 편승하여 병무청측은 530여 대상자 중 겨우 3%에 불과한 13명만에 대한 구제를 검토해보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병역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 형사법이나 시국사법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법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 사기의 저하 등을 야기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수구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있었던 3.6 사면복권조치, 제적학생들의 복적조치는 물론이고 최근에 있었던 수배학생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배해제조치와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복교 및 사면복권조치 등 과거청산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청산'과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방부 등의 행정관료들은 이 사회에서 새정부가 천명한 '과거청산'과 '문민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과거청산'과 '진정한 개혁'

국회가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짚은 시절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청년학생 양심수들,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름없는 피와 땀으로 기억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던 이들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어두운 그림자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새정부의 구호가 정치권에서마저 또한번의 구두선으로 끝난다면 누가 이 시대를 '진정한 개혁의 시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인 11월 3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의 신계륜의원이 저희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 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부의 개혁조치들을 마무리짓는 의미를 갖는다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국방상임위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다시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1993년 11월 15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KNCC 인권위원장)

성 명 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의 발표는 실제로 1년여의 긴 시간을 끌어온 문제를 종료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비흡한 조치였습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5백여 젊은이들은 최근까지 당국자들과의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한 국회의 청원을 존중함과 아울러 양군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 발표는 지난했던 과정의 종료도, 정부-민자당의 노고에 박수를 치기도, 받아드리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지난 과거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라고 발표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당국이 처음으로 양군모의 주장과 국회청원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이 올바르다면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2월 16일 발표는 청원취지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청원취지를 실질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구제되는 범위가 양군모 회원의 64% 가량이 될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설명한바 있으나, 병무청과의 실사결과는 29.7%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 출범 후 있었던 시국관련 수배자의 90%이상의 수배해제라든가, 시국관련 재적생의 전원구제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가 국회의 결의를 온전히 수용하는 실질적 해결로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청 산과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라는 국회의 결의내용에 부합하게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하는 문제인 만큼, 청원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64%구제라는 수치는 공동화되고 결코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의 선별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만큼 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발상은 국회의 결의와 사회각계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국방부 발표는 조속한 사회복귀라는 취지에서 볼때 단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7세 이상자 중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보충역 처분을 한다는 것은 조속한 사회복귀와는 무관하며, 27세 미만 대학졸업자의 경우도 18개월 방위라 할지라도 군복무 후 제대를 하면 결과적으로 취업연령 초과의 문제가 생기며, 27세 미만 자 중 1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2.16
68年生
69年生

최소한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세심한 기준과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해결을 해나가는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민자당에 축구합니다. 민자당은 정부출범부터 개혁에 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 왔습니다. 개혁의 정상적 전진을 위해 과거청산의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국관련 수배자 문제, 시국관련 제적 생 복적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양군모 사안에 대하여 국회청원의 본회의 통과에서부터 구체적인 실마리가 풀리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방부 발표는 이전의 태도보다는 진전된 것이었으며 발표가 있기까지 민자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간의 민자당의 입장을 보나 양군모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군모 5백여 청년들은 기왕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조속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의에 입각하여 해결한다면 보다 대승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끌어온 문제인지라 이제 결론이 낫으니 양보하라는 태도는 막바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수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염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민자당과 국방부 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은 국방부가 국회의 결의와 사회각계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여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문제의 해결과정이 문민정부의 개혁의 전진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4년 2월 18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